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2.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거래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3.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1차 위·수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규모 및 계약기간 등에 예외를 두고 있어, 재위탁 및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사각을 해소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다.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라. 심의·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안11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